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2019. 0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배경

-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해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도록 함



II

적용 대상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으로서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등도 포함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③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하고,
※ (예시)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게임, SNS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야 함
 - ※ 입법 취지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시 규제 집행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시

› 서버가 외국에 있고, 유사명칭의 한국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 부가통신사업 등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미 상당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음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함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함



→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서울외국환증가(www.smbs.biz)에서 조회 가능

③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수의 총합을 92(일)로 나눈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text{일일평균 이용자 수(국내 이용자를 말하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아님)} = \frac{\text{10, 11, 12월 일일 보유량}}{\text{(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수)의 총합}} \times 92(\text{일수})$$

④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III

국내대리인의 역할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 등을 위한 업무,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
 - ※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아니라 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국내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
-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
 - ▲ 국내대리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고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추진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함

IV

국내대리인의 자격

-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하나 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국외(해외)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음
 - ※ 국내대리인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동일인이어도 무방함

V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며, ①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②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함
 - 복수의 국내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국내대리인 모두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전화번호는 국내 전화번호를 말하나, 반드시 국내대리인의 이동전화 등 개인용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경우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함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이와 함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 · 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 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 ·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비.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 제4호의3	2,000	2,000	2,000